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자구를 수정하고,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 이내의 정지”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 ----- ----- ----- ----- -----사업 의 폐지 또는 6개 월 이내의 정지-- ----- -----.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 ----- ----- ----- ----- -----사업 의 폐지 또는 6개 월의 범위에서 기 간을 정하여 업무 의 정지-----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성평등가족부 령-----.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	④ (개정안과 같음)

	<u>제에 관하여는</u> <u>「행정기본법」 제</u> <u>32조에 따른다.</u>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27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김태선 · 이병진 · 김주영
서미화 · 장철민 · 장경태
어기구 · 한병도 · 한준호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나 폐지”를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u>정지나 폐지</u> 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 ----- ----- ----- -----폐 <u>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u>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